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최근 경제·산업구조의 급변에 따라 산단 혁신 및 미래산업 육성 등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조직 재정비 및 전담기능 신설
- 나. 분산된 기능 통폐합 등 생활접점분야 기능 확대 및 시민안전 기능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 다. 전국(장애인)체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가. 국 개편

- 1) 경제기획국 → 경제노동국
- 2)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 나. 과 신설 등

- 1) 신설 : 스마트산단과 / 체육시설관리과 / 환경관리과
- 2) 통합 : 미래전략담당관 +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담당관

- 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 2021. 5. 31. → 2022. 5. 31.(1년 연장)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기획국”을 “경제노동국”으로,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시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정책수립, 예산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경제기획국에 두는 과)”를 “(경제노동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제노동국에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및 스마트산단과를 둔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한다.

12. 스마트산단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2호) 중 “시설관리”를 “시설조성”으로 한다.

7.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및 회계과”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민원봉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4호,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15.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위생과, 종합허가과 및 민원봉사과”를 “청년청소년과 및 식품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보육복지 업무”를 “보육복지, 청소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

10호를 삭제한다.

7.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8.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를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설수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종합허가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제방)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추진”을 “수변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로철도사업의 업무 협의

9.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3.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를 “(환경교통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환경교통국에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
원녹지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제방)관리”를 “환경보
전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
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하천관리”를 “환경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
10호까지를 각각 제7호, 제8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
제한다.

2. 대기환경관리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제2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미시평생교육원”을 “구미시평생학
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인문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3.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나.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운영

다. 시립 예술단 운영

라. 예술회관 회원제 운영

마.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제24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의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1년 5월 31일”을 “2022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 식품위생과”로,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건과,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를 “도로과, 건설수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로, “토지정보과, (출)행정민원과, (출)농정과, (출)유통과”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출)행정민원과, (출)농업정책과, (출)유통특작과”로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전국체전추진단,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청년청소년과, 종합허가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③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 ④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 ⑤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한다.

- ⑥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 농정과장, 유통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유통특작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유통과장”을 “유통특작과장”으로 한다.

- ⑦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5호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한다.

- ⑧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기획예산과

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⑨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⑩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 ⑪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한다.

- ⑫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담당관

- ⑬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

로 하고, 같은 항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 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⑮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획국장, 행정안전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경제노동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 ⑯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⑰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기획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경제노동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 ⑱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 ①⑨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5 중 “신산업정책과”를 “신성장산업과”로, “환경보전과”는 “환경정책과”로, “농정과”는 “농업정책과”로 각각 한다.

- ②⑩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②⑪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한다.

- ②⑫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 ②⑬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②⑭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한다.

- ②⑮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②⑥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 ②⑦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 ②⑧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 ②⑨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과 기획담당”를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담당”으로 한다.

- ③⑩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노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기획예산과장”을 “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③⑪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②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미시평생학습원장

제3장의 제목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을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를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평생교육원”을 각각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③③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평생교육원장”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생교육원장”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④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를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전단,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4호, 제7조제2호, 제11조제2호 및 제13조 중 “평생교육원”을 각각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③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③⑥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정·유통·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유통특작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③⑦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국장

③⑧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유통과”를 “유통특작과”로 한다.

③⑨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제4항 별표6 중 “유통과장”을 유통특작과장“으로 한다.

④⑩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 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유통특작과장”으로 한다.

④⑪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통과장”을 “유통특작과장”으로 한다.

④⑫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④③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유통과장”을 각각 “유통특작과장”으로 한다.

- ④④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정과장, 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유통특작과장”으로 한다.

- ④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중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 ④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환경보전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신설·분리 또는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구미시평생학습원	구미시 산호대로 243 (공단동)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구미시 송정대로 89(송정동)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구미시 금오산상가길 12 (남통동)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구미시 산책길 51 (원평동)
구미시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여의도동)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구미시 상모동 156-1번지 일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경제기획국</u> , <u>문화체육관광국</u> , <u>행정안전국</u> , <u>사회복지국</u> , <u>도시환경국</u> 및 <u>건설교통국</u> 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 <u>경제노동국</u> ----- ----- <u>도시건설국</u> 및 <u>환경교통국</u>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u>감사담당관</u> , <u>미래전략담당관</u> 및 <u>홍보담당관</u> 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신 설></u> 1. (생략) 2. <u>미래전략담당관: 정책개발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u> 3. (생략)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 <u>기획예산담당관</u> , <u>감사담당관</u> ----- ----- -----. 1. <u>기획예산담당관: 시정의 종합 기획 및 평가, 정책수립, 예산에 관한 사항</u> 2. (현행 제1호와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제5조(<u>경제기획국에 두는 과</u>) ① <u>경제기획국에 기획예산과,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및 일자리경제과를 둔다.</u> ② <u>경제기획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시정의 기획·조정</u>	제5조(<u>경제노동국에 두는 과</u>) ① <u>경제노동국에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및 스마트산단과를 둔다.</u> ② <u>경제노동국장</u> ----- -----. <u><삭 제></u>

2. <u>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u>	<u><삭 제></u>
3. <u>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u>	<u><삭 제></u>
4. <u>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u>	<u><삭 제></u>
5. <u>시의회 운영 지원</u>	<u><삭 제></u>
6. <u>규제개혁 및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7. (생략)	1. (현행 제17호와 같음)
12. ~ 15. (생략)	2. ~ 5. (현행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7. ~ 11. (생략)	6. ~ 10. (현행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6. (생략)	11. (현행 제16호와 같음)
<u><신 설></u>	12. <u>스마트산단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사항</u>
18. <u>청년정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제6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u>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u> 및 전국체전추진단을 둔다.	① ----- ----- <u>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u> ----- -----.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u>	<u><삭 제></u>

한 사항

7.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교육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
항

11.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
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및
회계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9. (생략)

7.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 ----- 시
설조성-----

제7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민원봉사과-----.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9호와 같음)

10. · 11. (생략)

<신설>

제8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
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
정과, 위생과, 종합허가과 및 민
원봉사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복지
업무

5.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6. · 7. (생략)

<신설>

8. (생략)

9.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
정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12. · 13. (현행 제10호 및 제11
호와 같음)

15.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
정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 청년청소년과 및 식품위생
과-----.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보육복지,
청소년에 관한 사항

<삭제>

7.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 · 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
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삭제>

<삭제>

제9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계획과, 도시
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
원순환과 및 환경보전과를 둔
다.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 7. (생 략)

<신 설>

8.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
에 관한 사항

9.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
물 설치 및 관리운영

10.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추진
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수변과, 공원
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
중교통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시
재생과, 도로과, 건설수변과, 건
축과, 공동주택과, 종합허가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
-----.

1. ~ 5. (현행과 같음)

6.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
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로철도사업의 업무 협의

11. · 12. (현행 제6호 및 제7호
와 같음)

13.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 · 공유재산(도로, 하천, 제방)
관리-----

9.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변시설 조성 및 관리 · 운영

14.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
한 사항

제10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 환경정책과, 환경
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과, 공원녹지과 및 자원순환과

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제방)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변시설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5. (생략)

<신 설>

<신 설>

6.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로철도사업의 업무 협의

8. ~ 10. (생략)

11.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를 둔다.

② 환경교통국장-----
-----.

1.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대기환경관리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환경안전관리-----

<삭 제>

7.·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삭 제>

<삭 제>

4. ~ 6.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삭 제>

제20조(소관사무) -----

-----.

1. 구미시평생교육원 가.·나. (생략) <u>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계획 수립 및 운영</u> <u>라.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운영</u> <u>마. 시립 예술단 운영</u> <u>바. 예술회관 회원제 운영</u> <u>사.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u> <u>아. ~ 카. (생략)</u> 2. (생략) <u><신설></u> 3. ~ 8. (생략) 제2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u>제4조의2제1항</u>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생략)	1. <u>구미시평생학습원</u>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 에 관한 사항</u> <u>라. 인문도시조성에 관한 사항</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마. ~ 아. (현행 아목부터 카 목까지와 같음)</u> 2. (현행과 같음) 3. <u>구미시문화예술회관</u> <u>가.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계획 수립 및 운영</u> <u>나.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운영</u> <u>다. 시립 예술단 운영</u> <u>라. 예술회관 회원제 운영</u> <u>마.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u> 4. ~ 9. (현행 제3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제24조(설치) ① ----- ----- <u>제4조의2</u>----- -----. ②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담 당 관	박 주 영
	담 당	강 유 현
	담 당 자	박 민 주 (480-6773)